

【논 문】

간도 조선인과 ‘복식 투쟁’ -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에서 -*

이 동 진**

차례

- I. 서론
- II. 한말 동아시아와 복식
- III. 문화적 정체성 시기(1894년 이전)
- IV.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중첩 시기(1894-1910년)
- V.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분리 시기(1910-1945)
- VI. 결론

국문초록

간도는 조선인이 중국인보다 먼저 정착하여 다수를 이루었던 지역이었다. 중국 정부는 간도의 조선인을 추방하거나 중국인으로 귀화시키려고 하였다. 귀화의 표지는 중국인의 두식과 복식을 따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 동화-‘王化’-였다. 조선이 ‘中華’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中華主義’에 의해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조선은 만주족이 건국한 淸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이 명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소중화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간도의 조선인은 청 정부의 ‘薙髮易服’ 강요에 저항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관념, 곧 ‘문화(복식) 민족주의’가 ‘영토 민족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다. 식민지가 된 후에는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 ‘영토’가 의미를 잃었고, 대신에 중국과 일본의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2015년도 복원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력 사이에서 간도의 조선인은 ‘자치’를 추구하였다. 이 자치는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보장되거나 조선인 스스로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당 정부는 조선인에게 귀화의 조건으로 여전히 중국 복식 착용을 강요하였던 반면에, 1930년대 전반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싸웠던 공산당은 간도에서의 공산당 운동의 주력이었던 조선인에게 중국 복식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국적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이것은 간도의 조선인이 문화(민족) 정체성과 정치(국가) 정체성의 분리를 인정받은 것이었으며, 또한 간도의 중국인과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곧 ‘간도 조선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주제어 : 간도 조선인, 복식 투쟁, ‘치발역복’,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I. 서론

오늘날 두발은 복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치장(패션)에 불과하지만, 이 치장도 ‘제2의 신체(신체의 연장)’로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¹⁾ 다시 말하면 기능성과 상징성 중에서 기능성이 중요해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징성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발과 복식이 상징하는 의미는 ‘개인화’를 반영해서 ‘개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집단화를 반영하여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의미는 모두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신분은 성, 연령, 계층(부, 권력, 교양 등)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신분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차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신체, 두발, 복식은 곧 집단간의 ‘상징적 투쟁’의 장소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체, 두발, 복식의 상징성을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상징체 — 신체, 두발,

1) 마틸린 혼·루이스 구렐(1988), 오은경(2006), 풍타넬(2004), Corrigan(2008), Turner(1980) 등을 참고하라.

복식이라는 기표와 신분이라는 기의간의 연결로서의 기호들 —가 근대 사회에서의 상징체로 이행하는 장면을 신체, 두발, 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의 복식 개혁(1884년의 갑신외제개혁과 1894년의 갑오외제개혁)이 부딪혔던 저항과 1895년 2개월 남짓 실시되었던 단발령이 일으킨 소동이 그 생생한 사례이다.²⁾ 유교적 관념에서 두발은 신체의 일부였다.

1907년 황제 즉위식에서 다시 이전 황제(太皇帝), 새로운 황제, 황태자에서부터 신하들이 모두 단발을 하였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단발이 강요되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배재학당 학생, 천도교 신자, 일진회 회원 등과 같은 단발자가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단발에 대한 저항이 거세서 단발자는 의병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³⁾ 그러나 점차 단발자가 늘어났고 1920년대에는 신여성의 단발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⁴⁾ 단발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은 단발과 그것에 대한 반대가 모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식 개혁은 관복을 간소화하는 것이어서 신분적인 차별을 약화시키는

2) 1895년 봄에 제2차 의제개혁으로 ‘흑의령’이 발표되었다. 유생들에게 검은 옷을 강제하기 위해 아전이 제천 장담 마을에 명령서와 신식 문패를 가져오자 나중에 제천의병으로 참가하게 되는 서상렬이 이를 부수고 태워버리고, 동구에 ‘大明日月 小華乾坤’이라 써서 붙였다고 한다. 1896년 1월 서상렬은 의병에 출진하면서 조상에게 고한 축문에서 출진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난 8월에 국모께서 시해당하고 11월에 이르러 군주께서 강제로 殿形하셨다. 우리 동쪽 땅에 깃들어 있던 요순(唐虞) 4천년 華夏의 일맥이 떨어졌다. 우리 백성들에게 의지하던 孔孟 2천년 성현의 큰 도리가 끊어졌다. 열성조의 5백년 예악 전형과 父祖 수십 세의 의관문물이 끊어졌다.” 구완회, 2013, 『한말의 의병장 경암(敬庵) 서상렬(徐相烈)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54-55쪽, 56-57쪽. 제천의병이 거병의 대의로 내세운 것이 ‘復讐保形’이었다. 단발령이 공포된 날에 또한 음력에서 양력으로 곧 일본식 책력으로 바꾸었다. 제천의병의 지도자였던 유인석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만대의 법칙은 음력을 쓰는 것이 공자의 말이었다네(華東萬世則, 行夏仲尼言)”라고 하면서 양력 사용을 반대하였다. 송기섭, 2015, 『한시를 통해본 의암 유인석의 反關化 논리와 華夷的 서양인식 연구』 『한문고전연구』 30, 322쪽. 2016년 6월 21일에 유인석이 입었던 평상복인 深衣(幅巾·大帶 포함)가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고시』 제2016-42호 『대한민국 관보』 제18785호, 189면.

3) 의병들은 상투가 없는 사람을 모조리 죽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메켈저, 신복룡 역주, 1999, 『대한제국의 비극』, 집문당, 164쪽.

4) 1920년대 신여성의 단발 풍조에 대해서는 이소희(2015), 전혜숙·임윤정(2004), 한상권(2007)을 참고하라.

것이였다.⁵⁾ 단발령은 복식(衣冠)의 한 부분인 ‘冠’을 ‘모자’로 격하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두발과 복식이 나타내는 신분 가운데서는 계층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이 있었다. 한말 조선을 여행하거나 조선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눈에 조선인의 두발과 복식이 중국과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도 복식이 바로 민족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근대는 계층의 충돌로서뿐 아니라 민족의 충돌로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근대의 ‘복식 투쟁’은 또한 민족 투쟁으로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복식 투쟁’을 복식이 구성하는 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복식이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복식이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복식의 의미가 1차적으로(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전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복식이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복식의 의미가 정치에 의해서 2차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정체성이 민족과 같은 어떤 고유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정치적 정체성은 시민권과 같은 구성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복식의 문화적 정체성(복식 민족주의)과 정치적 정체성(복식 정치주의 혹은 복식 전략)은 분리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한다. 분리 또는 중첩되는 경우에도 문화적 정체성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 중심성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만주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 투쟁 또는 정치 투쟁으로서의 복식 투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복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근대 초입의 조선인 디아스포라는 만주, 연해주가 있었고, 이어서 하와이(미국 본토), 중국, 일본 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조선인 디아스포라가 유일하게 다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간도에서의 조선인의 복식 투쟁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것은 조선인 디

5) 일본에서는 단발령보다도 폐도금지령이 더 큰 반발을 일으켰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에서 신분을 상징하는 기호가 서로 달랐음을 뜻한다. 조선의 의제개혁에 관한 연구로서는 강상규(2010), 김성남(2006), 김소현(2005), 이경미(1977), 임운정·전혜숙(2011) 등을 참고하라.

아스포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구성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의 복식 투쟁의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간도 조선인의 복식 투쟁이 가장 강렬하였던 1910년 이전 시기에서의 ‘머리를 땀고 중국 옷을 입을 것(薙髮易服)’과 이에 대한 간도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복식 투쟁과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중첩으로서의 복식 투쟁이 1910년 이후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분리로서의 복식 투쟁으로 어떻게 전환하여 갔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간도 조선인의 시민권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말 동아시아의 복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선이 타자인 청과 일본(나아가 서양)의 복식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 이민자들이 아직 불법적인 신분이었던 시기에 조선인들이 다수자인 중국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중국의 복식을 따라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중국인의 이민이 합법화된 반면에 아직 조선인의 이민은 합법화되지 못하였지만 정부의 행정 이 조선인 이민 지역에까지 미침에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발역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과 중첩되어 복식 투쟁으로서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간도협약 체결 이후부터 만주국 수립 시기에 걸친 간도 조선인의 복식 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중국 복식을 입자는(變裝) 운동’이 나타났으며, 간도 현지의 중국공산당은 항일 투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해서 중국 복식을 강요하지 않고 조선 복식을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전자는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한 것이며, 후자는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대신에 정치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후의 과정은 다루지 못하였지만 현지 중

국공산당의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 ‘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하여 ‘간도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단초를 연 것이었다. 제6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간도 조선인의 복식 투쟁을 ‘간도 조선인 문제’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다.

II. 한말 동아시아와 복식

조선 시대에 복식을 논하면서 이상적인 것은 중국의 것으로, 못마땅한 것은 몽골의 것으로 돌리는 편향이 있었다.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중 「關北室女上髻辨證說」에 의하면 두만강 남안의 六鎭 풍속에는 혼인하지 않아도 16-17세가 되면 여자는 머리에 쪽을 찌고 남자는 상투를 트는 풍속을 소개하고, 여진족이 살던 고장이므로 오랑캐의 습속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 조선 시대는 복식은 신분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이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申晳가 정조 8년(1783년)에 상소한 글에서는 “驥帽는 朝士의 건인데 時士의 吏隸가 쓰기를 예사로이 하고, 도포는 유생의 옷인데 시장의 상인들이 예사로이 입으며..”라고 하였고, 순조 30년(1830년)에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내린 금령에서는 “타는 것과 입는 것은 각각 일정한 제도가 있는 것은 대저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하게 하는 바인데, 근래에 습속이 퇴폐하고 제도가 문란하여 ...사서인이 흰옷을 입는다... 여염의 천한 여자가 쪽머리(北髻, 궁궐양식)를 하는 것은 보기에 더욱 막되고 괴악하다”고 하였다. 반대로 양반이 상민의 의생활을 따르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두루마기(周衣) 착용이었다. 사대부와 조정 관리는 승려의 옷과 같은 廣袖周衣를 입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道袍나 深衣보다는 두루마기가 더 간편하였기 때문에 이들도 평상복으로 두루마기를 많

6) 김소현, 2005, 「19세기 조선의 의생활 풍속」,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공저,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들베개, 86쪽.

이 입었다. 1894년 복제 개혁에 의해 두루마기는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통용되게 되어 전통 복식에 담긴 신분성이 퇴색하였다.⁷⁾

만주족(淸)은 한족에게는 자신들의 두발인 변발을 강요한 반면에 조선인에게는 변발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몽골족(元)이 한족과 고려인에게 한 방식과는 반대였다. 몽골족은 금과 남송의 통치 하에 있던 한족(漢人과 南人)을 몽골족과 색목인과 비교하여 차별하였다. 몽골족이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차별의 징표라고도 할 수 있었다. 고려인은 大元 조정으로부터 색목인과 유사하게 우대를 받았으며 고려 왕실은 몽골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대신에 고려는 몽골로부터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화적 동화는 복식과 두발의 강요로 나타났다. 1272년 충렬왕이 세자 신분으로 원에서 귀국하면서 몽골족의 두발인 開剃辮髮(앞과 좌우 양쪽의 머리카락을 남겨 두 가닥으로 묶는 것)을 하였다. 이 풍습은 공민왕 때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고려인과는 다르게 조선인은 몽골족과 만주족의 풍습을 오랑캐의 풍습으로 보았으며, 한족이 만주족에 문화적으로 동화된 상황에서 조선이 명의 문화(中華)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고(小中華), 청을 표면적으로 事大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胡’로 낮추어 보았다.⁸⁾

서양인에게 조선인은 늘 중국인, 일본인과 비교가 되었는데, 조선인의 두발과 복식도 그러하였다. 조선인의 ‘상투’, ‘갓’과 ‘흰 옷(白衣)’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⁹⁾ 서양인으로서의 두발로 인해서 미혼 남자를 종종 여자로 오해하였고, 조선인의 모자가 다양하고, 사시사철 상의와 하의 그리고 버선까지

7) 김소현, 2005, 앞의 글, 76~77쪽.

8) 원래 교류가 없었던 몽골족과는 달리, 만주족의 조상인 말갈족은 발해를 구성한 민족이었던데, 발해가 멸망한 후에는 여진족으로서 고려와 인접하고 있었다. 고려는 여진족을 공격한 적이 있었으며(윤관의 9성 설치),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였을 때는 고려보다 상위에 있었지만 다시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다가(육진·사군 개혁), 청에 조공을 바치게 된 후에는 조선과 교린의 관계에 있었다. 더욱이 송과는 달리 명은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도와준 은인이었으며(再造之恩), 만주족은 두 차례나 조선을 침공하여 조선을 치욕에 빠뜨렸다. 조선은 치욕에서 벗어나는 방편으로서 ‘北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尊華’를 이념으로 하는 ‘소중화주의’를 채택하였다.

9) 상투에 관해서는 임윤정·전혜숙, 2012, 「내한 서양인 저서에 나타난 19세기말 조선남자의 상투와 단발명에 관한 시각」 『한복문화』 15(2)를 참조하라.

모두 흰색인 점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겼다. 외국인의 눈에 조선인의 두발이 신기했던 것은 당연하였다. 상투를 쓰는 민족은 조선인을 제외하면 중국 서남에 거주하는苗族에게만 찾을 수 있었다. 북방민족인 몽골족이나 만주족은 ‘辮髮(앞쪽 머리카락을 깎고 뒤쪽 머리카락을 땅는 것을 말한다. 辮髮, 剃髮이라고도 한다)’을 하였다. 당시 모든 중국인은 만주족의 두발과 복식을 따랐다.¹⁰⁾ 따라서 외국인의 눈에 조선인의 두발은 중국인보다는 일본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일본인은 상투 주위의 머리카락을 깎았지만 조선인은 한 올의 머리카락도 깎지 않은 것이 달랐다.

외국인인의 눈에 조선인의 두발과 복식이 이상하게 비쳤듯이, 조선인의 눈에도 외국인의 두발과 복식이 이상하게 비쳤지만, ‘개화’의 흐름 속에서는 서양인의 복식은 ‘오랑캐’가 아니라 ‘문명’을 상징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이 추세를 따른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1868년에 남녀 혼욕, 일본식 상투와 열치 등을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하여 엄금하고 개화의 상징으로 단발령을 반포하고 이를 반강제적인 계몽의 수단으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1870년에 군복을, 1872년에 관복을 양복으로 바꾼 뒤로, 1880년대에 서민들이 양복을 입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군인과 관료들을 비롯하여 교사, 의사, 은행원들도 널리 양복을 착용했다.¹¹⁾

이러한 일본인의 두발과 복식의 변화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을 서양 오랑캐와 동일시(倭洋一體)하게 했다. 결국 한국과 중국도 일본이 갔던

10) 1644년 剃頭辮髮令을 내려 한족에게 만주족의 두발을 강요하였다. 이는 한족이 만주족에 복종한다는 표시였다. 연행사가 중국의 선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치발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이것은 치발 유무가 조선이 청에 대해서 ‘소중화’를 자처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였기 때문이다.

11) 1881년 조사시찰단의 보고에서도 일본인의 두발과 복식이 관심을 끌었다. 박정양은 “예전의 상투는 짧게 잘라 지금은 남은 것이 없고, 지난날 친한 노비들에게 문신하던 것도 이제는 폐지되었으며 부녀들이 치아를 검게 물들이던 것도 이제 금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고, 또 엄세영은 “무진년(1868) 이래 점차 의복제도를 바꿨는데 두건 모양의 검은 모자를 쓰고 우직(일본식 겉옷 하오리)을 끈게 내려뜨리며...소매는 모두 짧고 좁으며 관복에만 칼 차는 것을 허용한다. 군졸과 무관에서부터 시작해 임신년(1873)에는 군주 이하 모든 군과 민이 다 새로운 복장으로 바꿨다”라고 보고했다. 허동현, 1999,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 근대의 길목에 선 조선의 선택』, 당대, 243-246쪽.

길을 따라서 서양식으로 두발과 복식을 바꾸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단발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다. 이는 단발 자체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본에 비해서 정치적 정체성(근대주의)이 미약하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선의 경우에 복식이 문화적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가장 강력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복식 투쟁이 단발령 반대로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단발령 반대가 없었고, 중국에서는 ‘辮髮 자르기(剪辮) 운동’으로 나타났다.¹²⁾

1860년 이후 조선은 중국, 일본 외에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과 육로로 국경이 연결되어 있었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개척하던 시기는 조선인의 이민이 시작되던 시기여서 연해주 개척(농경)이 조선인 이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러시아정부는 조선인 이민자를 자국의 신민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문화적 동화(두발과 복식을 포함하여)를 강요하게 되었다. 조선 북부(압록강과 두만강 연변), 만주(압록강과 두만강 연변, 연해주(두만강 연변), 특히 두만강 연변의 조선 북부(이전의 육진), 두만강 연변의 만주(후에 조선인이 간도라고 부름), 그리고 두만강 연변의 연해주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간도의 조선인은 鬚髮(조선식 두발), 薙髮(중국식 두발), 斷髮(조선식과 러시아식)이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연해주의 조선인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1876년에 외무성 7等出仕인 현직 외교관으로서 통역 1명을 대동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던 세와키 히사토가 작성한 「블라디보스토크견문잡지」가 있다.¹³⁾ 보고서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의 두식과 복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2) 중국에서는 明末淸初와 淸末民初 두 차례에 걸쳐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복식 투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樊學慶(2014), 劉志琴,(2005, 1994), 張德安(2006), 陳蘊茜(2007), 韓冷(2015) 등을 참고하라.

13) 이것은 4월 7일에서 6월 14일까지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다시 나가사키로 귀환할 때까지의 69일간을 기록한 일지로서 다음해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상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상업 상황과 일본인 등의 동태를 정리하여 외무성에 제출한 최초의 정식 보고서였다. 시찰 목적 중에는 또한 북부 조선 상황의 정탐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구양근 역,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 239~240쪽.

“조선을 빠져나온 이들은 조선풍의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자도 있고 러시아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 복장을 하고 있는 자도 있다. 조선풍의 머리를 하고 있는 자는 아직 러시아의 정치에 신복하지 않고 귀국할 마음이 있는 자이고,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 옷을 입는 자는 러시아의 정치에 신복하고 귀국할 생각을 끊은 자라고 한다.” 세와키 히사토가 귀국하는 길에 조선인 김인승을 대동하였는데, 김인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풍의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왔을 때도 한복을 입고 상투를 들고 생활하였다. 그는 바로 외무성에 고용되었다가 몇 개월 후에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연장되어 다음 해 강화도 체결 당시 통역으로 참가하였다. 김인승은 강화도로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한복에 상투를 하고 도쿄 거리를 활보하였다고 한다.

조선인은 1895년 단발령이 반포되기 전에는 조선에서는 단발을 할 수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단발을 한 사람도 나타났다. 단발은 당연히 복식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특별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중국 산둥성 威海에 주둔하는 일본군(청일전쟁 기간인 1895년 2월에 점령)에 있던 조선인 3명이 그러한 사례였다. 關東에서 거병한 의병장 閔龍鎬가 1896년에 만주와 북부조선을 거쳐 威海로 갔을 때 거기서 조선인 3명을 만났는데 그들 중 한명은 부산에서 살다가 19세에 머리를 깎고 威海에 온 지가 3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일본의 국법으로는 병정은 20세에 입대하여 31세에 제대한다고 하므로 위 조선인은 늦어도 1893년에는 단발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Ⅲ. 문화적 정체성 시기(1894년 이전)

근대적인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귀화는 곧 문화적 동화(‘王化’)를 의미하였고 국적 이탈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적 이탈자는 본국 정부의 입장에

14) 閔龍鎬, 1984, 『關東倡義錄』, 국사편찬위원회, 392쪽.

서는 ‘化外之民’이었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지만 문화적 동화가 되고 나면 그뿐이었고, 문화적 동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국에서 ‘쇄환’을 할 수 있었다. 쇄환 후에는 당연히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고려 말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명에 귀화하였고,¹⁵⁾ 조선 초기에 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에 귀화하였으며,¹⁶⁾ 누루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이 납치되어 노예로 팔렸다. 이들 중 일부는 쇄환되었지만 나머지는 잔류하였다. 잔류자 가운데서는 한족과 마찬가지로 청의 팔기에 편입된 자도 있었다. 이들은 고려인들이 명(한족)에 동화되었듯이 청(만주족)에 동화되고 말았다.

이후 청과 조선은 정묘호란에서의 ‘江道 和約’에서 국경을 지켜서(各守其疆) ‘犯越’을 방지하였다. 범월은 곧 외교 문제로 취급되었으므로, 범월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령도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 결과는 청에 보고를 해야 했다. 청은 국경 지방을 비워두었을 뿐 아니라(間廣), 변장의 동쪽인 변외 지역도 군대주둔지(八旗住防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두었다(封禁).¹⁷⁾ 빈 지대에는 ‘사냥터(圍場)’를 설정하고, 또 산삼, 東珠(송화강 하류와 그 지류에서 나는 진주, 만주족이 冠에 장식으로 사용) 등과 같은 자원을 국가—황실, 왕부, 팔기 등—가 독점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출입금지지역을 설정하였다. 조선도 이미 세조 때 압록강 연변의 4군을 폐지하여 이 지역을 비워두고 있었다. ‘폐4군’ 지역에 거주를 허가하고 읍을 설치하지는 주장이 있었지만 쉽사리 실행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범월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연변의 만주는 200여 년간이나 중국인과 조선인이 모두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었다. 청은 이 지역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순찰을 돌게 했다.

15)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하러 파견되어 온 이여송도 고려인 귀화자의 후손이었다.

16)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이지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17) ‘봉금’이 아니라 ‘關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 전체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 관문 출입을 통제하여 특정 지역을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林士鉉, 2001, 『淸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臺北: 政治大學歷史系; 김선민, 2013, 「국경시대에서 국경선으로: 19세기 말 청과 조선의 관계」 『중국사연구』 82.

1860년대가 되면 압록강 연변의 만주에 먼저 중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1869년에 폐4군 지역에 자성군과 후창군을 설치하였다. 1871년 겨울에 후창군이 설치되기 전에 관행으로 해오던 압록강을 넘어와서 벌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후창군수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중국인 벌목비적들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인 마을을 공격한 것을 조선 군대가 격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후창군수가 다음 해 여름 3명의 정탐자를 압록강 연변의 만주로 파견하여 청인들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당시 압록강 연변 지역에는 조선인들이 중국인보다 더 많았다. 이들은 40일간 강북 지역을 정탐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이 『江北日記』이다.¹⁸⁾

‘벌목비적’이라고 한 청인들은 사실상 비적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였다. 이들 가운데는 적지 않는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압록강 연변지역에는 조선인의 수가 더 많았다. 이들이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인들이 가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조선인들을 가세하게 하여 쳐들어오도록 한 것도 2명의 조선인이었다. 『강북일기』에서는 청인들을 ‘오랑캐(胡人)’라고 하고, 청인과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조선인을 ‘가짜 오랑캐(假胡)’라고 불렀다. 일반 조선인은 중국인과 그 행색이 구분되었고, 가옥의 형태도 달랐지만, 조선인이 조선에서와 같은 복식(衣冠)을 갖추고 있다가는 마적의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이 때문에 정탐자들은 한 조선인 집에 의관을 맡겨놓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돌아다녀야 했다. 조선인이 ‘가짜 오랑캐’ 행색을 하거나 조선인 행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이 지역에 청 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중국인이거나 조선인이거나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더 북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면 청의 행정이 미치는 지역이었는데,¹⁹⁾ 소문에 의하면 북쪽의 길림성에 속하는 한 행정관청 소재지에는 조선인 3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18) 이동진, 2005, 「‘강북’의 조선인 사회 :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논총』 9.

19) 더 동쪽으로 가면 백두산이 있었다. 이 지역은 더 나중에 행정이 미쳤다.

그들은 모두 중국인에게 동화되었다.²⁰⁾ 만약 동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조선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으로 추방되며, 그 즉시 효수될 것이었다.

이 지역에 청 행정이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77년부터였다. 1876년에 封禁이 해제되고, 1877년에 통화현과 회인현(나중의 환인현)이 설치되었다, 이후 중국인은 이 지역에 합법적으로 이민을 올 수 있었던 반면에 조선인은 여전히 ‘범월’에 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지역에는 중국인의 수가 조선인보다 더 많게 되었다. 1872년에는 압록강 연변 지역은 조선인의 수도 적지 않았고 인구는 적고 땅은 넓었으므로 조선인은 조선인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었지만, 1877년에 이 지역에 행정이 미치게 되자, 청 정부는 조선인이 개간한 토지의 경우에도 조선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토지를 중국인에게 불하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 지역에서의 조선인은 중국인의 소작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청 정부는 조선인에게 귀화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에게 ‘치발역복’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조선인은 토지소유권, 경작권, 거주권이 취약하였다. 청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선인은 불법체류자였으며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농경에 소질이 있는 조선인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며, 조선인으로서도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으므로, 실제로 추방-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쇠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두만강쪽을 보면 경흥 등을 통해서 두만강하류인 연해주로 이민을 먼저 갔지만 무산 등을 통해서 두만강중상류인 만주로도 조선인이 이주를 하였다.²¹⁾ 처음에는 아침에 농사를 짓고 저녁에 귀가하거나 봄에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겨울에 수확물을 가지고 귀가하는 형태이다가 가족이 모두 이주를 하는 형태로 발전해 갔다. 흉년 또는 세역의 부담으로 인한 이주 압

20) 아직 썩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길림장군의 관할지역을 편의상 길림성이라고 한다.

21) 두만강 상류지역인 만주를 중국에서는 ‘길림변지’, 조선에서는 ‘강위’라고 불렀다. 나중에 조선에서는 이 지역을 ‘간도’라고 불렀다.

력은 무산, 회령, 종성 등지에도 마찬가지로였고, 이 지역의 토지는 척박한 데 비하여, 두만강 대안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였다. 이들이 월강을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범월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예로서 1864년 5월에 함경도 관찰사 이유원이 범월죄인 김홍순과 최수학을 경원 강두에서 효수했다는 上啓가 있었다.²²⁾

조선인이 ‘월강죄’로 효수될 위협을 무릅쓰고 간도로 이민을 간 것은 연해주로의 이민과 마찬가지로 흉년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인의 쇄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월강 조선인으로는 조선으로 송환되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비단 처벌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었다.²³⁾ 조선인이 강을 건너간 것은 조선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북일기』에서 나오듯이 조선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간 땅이 이상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압록강 대안 지역으로 간 조선인은 길에서 마적에게 맞아죽거나 굶어죽거나 얼어죽었고, 길에서 죽음을 면한 경우에도 중국인에게 고용되어 노예와 같이 살았다. 그러나 이들도 조선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벌을 두려워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적어도 생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적어도 신분도, 세금도 없었으며, 또 다른 땅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압록강 대안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만강 대안 지역도 백두산을 끼고 있는 무산부의 조선인들이 가장 먼저 강을 건너갔다. 이들이 압록강 상류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 상류도 건너갔다. 두만강 너머는 중국의 행정관청(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²⁴⁾ 그러나 백두산 부근은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으므로 처음 이곳에 간 사람들도 점차 강 아래로 내려왔다. 강을 따라 내려오더라도 두만

22) 양태진, 1999, 『近世韓國境域論攷』, 경인문화사, 50쪽.

23) 조선정부가 조선인 쇄환을 위해서 ‘안무사’를 파견한 것은 범월자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었다.

24) 압록강 방면으로는 봉황성장소제지, 두만강 방면으로는 혼춘협령소제지가 있었다.

강 대안은 압록강 대안과는 달리 중국인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아직 중국인의 이민자는 두만강 대안까지는 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두만강 대안과 압록강 대안에서의 그 후의 조선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조건이었다. 두만강 대안의 조선인은 중국인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중국 복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이 생존을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문화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비록 불법적이기는 하였지만 간도는 조선내지의 연장이었으며, 간도 조선인은 두만강 대안의 조선내지의 조선인과 같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두만강 대안 지역은 조선 정부가 범월죄로 처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조선인이 개척할 수 있는, 비어 있는, 그것도 비옥한 땅이었다. 원래 ‘間島’라는 명칭은 光霽嶺(용정시 개산툰진 광개항 광소촌) 앞에 있는 두만강 북안의 한 뚝의 모래땅—길이가 3-6리, 너비가 2-3리 가량 되는—을 가리켰다. 1881년에 조선의 개간민들은 이 모래땅의 북쪽에 물도랑을 파고 두만강 물을 끌어들이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후 큰물이 지면서 물도랑이 작은 강이 되면서 모래땅은 두만강 사이에 긴 작은 섬으로 되었다. 이에 조선 사람들이 間島 혹은 壘島라고 불렀고 청의 관방에서는 夾江 혹은 假江이라고 불렀다.²⁵⁾ 윤정희가 쓴 『간도개척사』에 의하면 1880년에 회령부사 홍남주가 두만강 북쪽 馬羅洞을 개간할 것을 권유하고 그 일대를 ‘間島’라고 명명했다고 한다.²⁶⁾ 곧 ‘범월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만강을 건너가는 것을 허가해 주기 위해 대안 지역에 물길을 내어 그 지역을 섬으로 간주하는 묘안을 낸 것이었다. 조선인의 개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간도의 범위도 확대되어 갔다.

25) 전광하·박용일 편저, 2000, 『세월속의 龍井』, 연변인민출판사, 12~13쪽.

26) “부사 홍남주는 국토확적(國土廓拓)의 대공을 수립할 자부심이 유연히 생(生)하였다. 다민(多民)을 권유하여 월간원서(越壘願書)를 정하되 두만강을 월편으로 관입(灌入)해야 간도(間島)라 칭하게 하라는 지시라...” 윤정희, 『간도개척사』: 윤병석, 2007, 『조선인(한인)의 간도 이주 개척과 ‘간도개척사’』 『백산학보』 79.

1880년에 회령부사의 두만강 대안, 곧 간도의 개척 추진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등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압록강 연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만강 연변에서의 조선 정부의 정책도 두만강 대안인 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청 정부도 두만강 북부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1878년에 어무허소로좌령 치소(1736년에 참에서 좌령 치소로 승격되었다)에 私墾한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시키고 개간지(熟地)와 미개간지(生荒地)를 분별하여 세금 부과(升科) 연한을 결정하고 개간민과 개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1880년에는 어무허소로좌령 치소에 돈화현을 설치하고,²⁷⁾ 혼춘 외에도 紅旗河, 黑頂子, 南崗 등에도 靖邊軍을 주둔시켰다. 1881년에는 혼춘의 팔기군 사령군을 協領에서 副都統으로 승격시키고 군대를 증강하였다.

1881년에는 ‘盛京東邊(압록강 대안)間曠地開墾條例(1875년 반포)’의 예에 따라 혼춘과 南崗(나중의 국자가, 곧 延吉) 등지에 개간을 허가하고 나아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춘에 ‘招墾局’을, 東五道溝, 흑정자, 남강 등지에 초간분국을 설치하였다. 1881년에 ‘개간 모집(招墾)’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혼춘에 파견된 ‘초간국’ 장관(지부 자격 취득) 李金鏞이 토지를 측량(丈量)하다가 이미 이 지역에 조선인이 토지를 개간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남강초간국에 속하는 종성과 회령 대안에서의 조선인 이민자의 수와 경작지는 더 많았다. 1882년에 청 정부는 조선인 개간민(墾民)을 중국 호적에 등록시키고 돈화현과 혼춘부도통아문이 관할한다고 조선 정부에 통고하였다. 조선 정부가 ‘쇄환’ 기간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혼춘에서 러시아와의 국경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⁸⁾

27) 돈화현 관할지역은 처음에는 고려령서부지역까지였다가 1885년에 할바령동부지역인 남강이 혼춘초간국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어 할바령서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28) 이것은 1881년 ‘이리 조약’ 체결로 서부 국경에서 발생한 ‘이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다시 동부 국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방어가 현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청 정부는 吳大澂을 파견하여 러시아와 ‘국경 획정(鑑界)’을 하게 했다. 오대징은 러시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이 지역에 이민을 초치하여 개간을 하는(移民實邊) 정책을 추진하였다.

1882년 청과 조선간에 <수륙변민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1883년에 조선 정부는 어윤중을 西北經略使로 파견하여 조선인 ‘쇄환’과 조선과 盛京, 조선과 吉林 사이에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담당하게 했다. 어윤중은 7월에 종성에서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준비하는 동안에 돈화현과 혼춘부도통아문에서 조선인을 쇄환해 가라는 공문을 무산, 회령, 종성 등지에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종성부사 이정래와 부민 등이 조선인 이민지역은 백두산정계비에서 청과 조선과의 국경으로 정한 ‘土門’의 이남, 곧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을 듣게 되었다. 이들은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분계강-곧 해란하-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윤중은 종성부민을 파견하여 백두산정계비의 문구를 확인한 후에 종성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돈화현에 조회하게 하였다. 어윤중은 국왕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월강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조선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청 정부에 조회하고 국경 획정(勘界)를 요구했다.

청 정부는 1885년에 <조선길림육로통상장정>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通商局’을 회령 대안(和龍峪, 용정시 지신향), 종성 대안(光霽峪), 경원 대안(西步江, 혼춘시 삼가자향) 등에 설치하였다. 조선과 길림간의 통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도 굳이 통상국을 설립한 것은 조선과 러시아간에 육로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기실 통상국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선인 개간민들이었다. 이에 통상국은 ‘越壑局’이라는 명칭을 걸고 사무를 보았다. 이렇게 하여 중국인 개간민을 관리하는 초간국과 조선인 개간민을 관리하는 월간국이 병립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조선 정부가 조선인 이민자를 쇄환해 갈 뜻이 없음을 알고 1885년 봄부터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려는 시도도 해 보았다. 그러나 한인들은 남강 일대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축발귀순을 강요하는 실정이었다.²⁹⁾ 이에 청 정부는 조선인을 추방하는 것이

29)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資料』 4, 光緒 111 ; 김춘선, 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移民實邊’ 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연구 : 북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 21쪽.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인한 후에 조선인 개간민을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호적에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청과 조선이 1885년(을유감계)과 1887년(정해감계) 두 차례 감계 회담을 개최하였다.³⁰⁾ 이 시기는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로 원세개가 조선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있었다. 1887년의 제2차 감계 회담에서는 감계사 이중하가 1885년의 청 정부의 주장대로 두만강 국경을 인정하고 두만강 상류에서 백두산까지의 육지에서의 국경을 정하기만 하면 되었다.³¹⁾ 그러나 다시 두만강의 수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남쪽인가 북쪽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해결되지 못하여 다시 회담이 결렬되었다.³²⁾ 청 정부는 감계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였지만 조선 정부는 청 정부가 북쪽 물줄기를 주장하는 한 감계회담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였다.

청 정부는 감계회담에서 이미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이라는 사실은 확정되었다고 보고, 월간국이 관할하는 조선인 이민자를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치발역복’을 강요하였다. 1889년에 토지를 민간인에게 불하하기 위해 토지측량(丈量)을 행하고, 1890년에는 조선인에게 토지를 조사하여 불하하면서(淸丈), 행정단위(甲)에 편입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며 치발역복을 해야 토지를 분배한다고 명령했다. 청 정부는 두만강 대안 지역에 保와 社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사에 鄉約을 두었다. 1894년까지 4개의 保, 39개 社, 124개 甲, 415개 牌를 설치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³³⁾ 조선인 민호가 4,308호에, 인구가 2만 899명에 달하였다. 청

30) 청과 조선의 감계회담은 청과 러시아의 감계회담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청과 러시아의 감계회담인 <琿春東界約>은 1886년 7월 4일에 훈춘에서 吳大澂과 러시아 관리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31) 이중하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원세개가 제안한 ‘借地安民策(곧 중국의 영토를 인정하고 조선인이 거주권을 가짐)’과 관련이 있었다.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涉の發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

32) 1909년 간도협약(일본의 명칭)에서는 종래 청 정부의 주장대로 남쪽의 물줄기를 국경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다시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회담에서는 종래 조선 정부의 주장대로 북쪽의 물줄기를 국경으로 인정하였다.

33) 두만강 연변에 조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내지로 갈수록 조선인 비율이 낮아졌다.

정부는 초간국과 월간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양 기관을 통합하여 ‘撫墾局’이라고 개칭하고, 두만강 연변에 조선인 ‘專墾區’를 설정하고 조선인의 이민을 장려하였다.

1894년까지 조선인 이민자들은 ‘치발역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발역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는 조선으로 귀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연해주로 재이주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남아서 치발역복에 저항하였다. 청 정부도 처음에는 치발역복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했으나 곧 느슨해졌다.³⁴⁾ 조선인 가운데서 치발역복을 하는 자는 향약(鄉約), 패두(牌頭) 등속뿐이었다. 아마도 청 정부가 치발역복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못한 것은 조선인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 중국인의 이민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귀환하기 보다는 남아 있는 것이 ‘移民實邊’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과거의 예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조선인 이민자가 중국인으로 동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치발역복’이 문화적 정체성과 충돌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19세기 후반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 곧 민족주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IV.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중첩 시기(1894-1910년)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조선과 청과의 관계가 수정되었다. 청은 더 이상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청과 체결한 조약이 모두 폐지되었다. 1897년에 함경북도관찰사 趙存禹는 지도를 작성하고, 조선인 이민자의 수가 수만호에 달하는 반면에 청인들의 수는 조선인의 백분의

34) 나중에 오류정은 간도분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청 정부가 치발역복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일에 불과한데도 조선인이 중국인의 압제를 받으며, 변발을 하거나 청인들의 복장을 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³⁵⁾ 현지 조선인 관리들 사이에서는 다시 감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이들은 심지어 송화강이 조선과 청의 국경이며, 따라서 연해주도 조선의 땅이므로, 청이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선, 청, 러시아가 다시 국경을 획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³⁶⁾

1899년에 조선과 청은 <한청수호조약>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비자를 받아서 내지 여행과 통상을 할 수 있고(제8조), 양국 육로교계처는 변민이 와서 무역을 하는 장소이고 변민이 이미 월간을 한 자는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이후 변계를 몰래 넘어오는 자는 피차 금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기로 하였다(제12조). 간도의 조선인은 불법 이주자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청 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청 정부는 종성 대안(地他所)에 무민독리사무를 두고 군관을 주둔시키고, 조선인 이민자에게 변발역복, 청인복장을 강요하였다. 하는 수 없이 일부 조선인 이민자들은 한 집에 한사람씩 변발을 하고, 귀화인인양 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대다수는 강 건너로 귀국을 하고 한집에 연소자(조선인 미혼남자는 머리를 땅았기 때문에 변발과 유사하였다) 한사람씩을 남겨두는 실정이었다.³⁷⁾ 치발역복에 반대하는 조선인의 토지는 몰수당했고, 몰수당한 토지는 중국인이나 변발 귀화한 조선인에게 나누어주고, 매상에 2량2전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1900년 의화단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00년 직후 간도 조선인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가 있었다. 첫째, 러시아

35) 양태진, 앞의 책, 82쪽.

36) 조선과 청의 감계회담에서 ‘토문(백두산정계비에서 두만강의 수원으로 지정한)’이 해란 하이 강은 청의 영토에서 발원하였다가 아니라 송화강의 수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청 교섭위원은 그렇다면 송화강으로 국경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감계사 이증하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고종은 1883년에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파견하면서 두만강 하류에 있는 섬인 녹둔도를 조사하게 했다. 당시 녹둔도는 북쪽 러시아 영토에 붙어서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녹둔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

37) 양태진, 앞의 책, 81쪽.

로부터 이주하여 귀화한 자로서 대부분이 단발 양장을 하고 있었다. 1900년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혼춘, 왕청 등 러시아 접경지대에 거주하였고 인구는 대략 전체 조선인의 2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둘째, 청 정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얻고 치발역복한 자들로 중국인과 모습이 같았다. 이들이 수적으로 가장 많아서 전체 조선인의 5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셋째, 조선 민족의 풍습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중국인의 소작농으로 경작을 하며 청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들은 주로 두만강 북안에 집중하여 거주하였으며 청 정부로부터 가장 심한 압제를 받고 있었다. 대략 전체 조선인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⁸⁾ 이와 같이 간도의 조선인들은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에 따라서 다른 면모를 보였다. 첫 번째 부류는 상투를 들었으며 ‘서양식 절반에 조선식 절반’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상투를 쪽지고 중국옷을 입거나, 머리를 땅고 조선 옷을 입었으며, 세 번째 부류는 여전히 ‘백의흑관’을 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외출하거나 청 관원이 마을에 올 때만 치발하거나 역복을 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치발역복한 조선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³⁹⁾

의화단사건을 빌미로 러시아군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자 상황이 반전되어 조선 정부의 간도 조선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러시아군은 러일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간도에 주둔하면서 조선인 이민자가 원래의 생활 유풍을 지켜나가도록 협조하였다. 1901년 5월 외부대신 이도재와 주한러시아공사 웨베르 사이에 <간도한러공동통치조약>(밀약)을 체결하였다. 웨베르는 조선, 청, 러시아 3국이 행정위원을 파견하여 간도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안을 내놓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마산포를 조차해 주면 간도를 조선령으로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⁴⁰⁾ 조선 정부는 1901년 3월 회령에 변경경무서를, 그리고 무산과 중성에 그 분서를 설치하였고, 1902년 6월에

38) 국회도서관, 1975, 「간도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의 참고자료 1」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155쪽.

39) 조선족략사편찬조, 1989, 『조선족략사』, 백산서당, 35쪽.

40) 양태진, 앞의 책, 86쪽.

주리공사 이범진의 동생인 이범윤을 간도시찰사(叅訪使)로 파견하였다. 간도시찰사를 파견한 목적은 조선인 호구 조사와 80세 이상의 조선인 이민자를 본국의 예에서와 같이 포상하기 위해서였다. 7월이 되자 훈춘부도통이 이범윤에게 공문을 보내어 치발역복을 다시 강요해 왔는데, 이범윤은 조선인 이민자들에게 ‘치발금지령’을 내리고, 조선의 외부에 보고하여 주한청국공사에게 이 사실을 조회하게 하였다.⁴¹⁾ 청 정부가 8월에는 향약을 설치하려고 하자, 조선인 이민자들이 총향약으로 임명된 한득신의 집을 파괴하였다. 청 정부는 조선 정부의 간도 관여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1902년에 국가가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화룡육(무간국 소재지)에 분방경력청을 설치하였다.

이범윤은 1903년까지 호적부 25책을 편제하고, 부동산 364만 7,496원 상당가를 조사하였다. 1903년 8월 의정부 참정 김규홍이 상주하여 간도시찰사인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상주시키기로 하였다.⁴²⁾ 이범윤은 출병을 요청하였지만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현지에서 청장년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私砲隊를 조직하고, 그 경비는 현지 조선인에게서 거두는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모아산, 마안산, 두도구 등에 營所를 두었다. 이범윤은 향약 등을 포박하고 대신에 각 사에 회장을 두었으며, 조선인에게 청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1904년 2월에 이범윤과 청 군대가 충돌하였는데, 9월에 청 정부가 이범윤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조선과 청의 현지 관리들 — 조선측은 함경북도 교계관 및 경무관을 겸한 진위대장 최남룡, 중국측은 연길청지부 직작언과 길강군통령 — 이 광제옥 청관에서 만나 <한중변계선후장정(또는 新定劃界防邊條約)>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이범윤을 철수시킬 것, 이범윤을 복간도관리로 인정하지 않

41) 외부에서는 조회를 하면서, ‘두만토문이북 아국 우민(愚民)’이라고 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적지 않은 점을 들어서 ‘易地思量’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적절치 않다.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조선에 귀화한 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권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조선 외부는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해서 치발역복을 강요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주한청국공사도 “만약 일찍이 귀화(입적)하였거나 자원을 하지 않으면 치발역복을 필박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한국사료연구소, 『일제비록(1) 간도문제 : 통감부간도 파출소기요』, 523쪽, 541~542쪽.

42) 양태진, 앞의 책, 84쪽.

을 것, ‘古間島’ 즉 광제육 假江地는 종전과 같이 조선인의 경작을 인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⁴³⁾

이범윤은 러시아군에 가담하여 철수에 응하지 않으므로 청국공사가 조선 외부에 조회를 하였다,⁴⁴⁾ 청 정부는 두만강 좌안의 군대를 철수하고 위원을 파견하여 감계를 하고,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북경주재 일본공사가 러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간도 문제를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해 오자 이에 따르기로 하고 조선 정부에게 월경 방지를 당부하였다. 이범윤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자 연해주로 망명을 하였다. 1906년 청 정부는 간도에서 마지막으로 토지 측정을 실시하여 다시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치발역복을 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다시 토지를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인 가운데 치발역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울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후 간도 문제는 조선통감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이 이또 히루부미 통감에게 간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07년에 제1차 러일밀약으로 만주에서의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권위가 확정되고 간도는 일본의 세력권인 남만주에 속하는 것이 확인된 직후에,⁴⁵⁾ 조선통감부가 간도의 한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일본인을 지휘자로 하는 일행을 파견하여 용정에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하였다.⁴⁶⁾ 파출소의 관할은 해란강이남의 4간도로서, 각각 북도소, 중성간도, 회령간도, 무산간도로서, 그 아래에 사(41사)와 촌(290촌)을 설치하고, 14개의 헌병분견소를 설치하였다. 파출소는 청 정부가 임명

43) ‘간도’의 명칭이 외교 문서에서 최초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였다. “고간도(古間島)는 광제육강(光霽峪江)의 땅이며, 종성(鐘城) 한민(韓民)에게 경작할 것을 허락한다(제8조).”

44) 間島省公署 總務廳文書課, 1936, 『間島史(上) 古本』, 41쪽.

45) 각각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획정된 남만주와 북만주는 송화강을 경계로 하였다.

46) 용정에 처음으로 조선인 마을이 들어선 것은 1877년 봄 열네 세대가 울창한 산림을 지나 육도하를 따라 걸어 드디어 육도하와 해란강 두 합수목에 이르러 해란강 기슭의 충적평원에 행장을 푼 것이 시초였다. 진광하·박용일, 앞의 책, 4~5쪽.

한 도향약, 향약과 같이 이미 청의 복식(淸裝)을 한 조선인, 곧 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청에 귀화한 조선인에 대해서도 조선인으로 간주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청 정부도 파출소의 설치에 대응하여 국자가에 길림변무공서를 설치하고 1907년 말까지 각지에 파관처(또는 파관소) 7곳을 설치하였다.

청과 일본의 현지 기관이 직접 조선인을 통치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이에 청이나 일본은 조선인 대리인(중개인)을 필요로 하였다. 청 정부가 임명한 도향약, 향약,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임명한 도사장, 사장이 그들이었다. 간도파출소에는 조선인 순사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조선인 복장(韓服)을 한 사복 경찰도 있었다. 조선인 순사와 함께 일진회원도 간도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1907년 말에 14곳에 지회를 설립하였다. 일진회원들도 단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순사와 마찬가지로 금방 눈에 띠었다. 일진회원들은 치발역복을 하지 않은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회령과 중성 대안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간도파출소현병분견소가 청 정부의 대리인인 중국 복식을 한 조선인 도향약, 향약을 탄압하였듯이, 길림변무공서(파관처)도 일본의 대리인인 단발을 한 일진회원을 탄압하였다. 대부분의 조선인 이민자는 동간도동부에 거주하고 있었다.⁴⁷⁾ 간도파출소가 통감부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1908년 6월에 한요구 파관처의 관원이 ‘서간도(동간도서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각 호를 방문하여 치발역복을 하지 않는 자는 속히 이 지방을 퇴각하라고 하고 또 귀화원서에 날인을 하게 하였다. 이에 이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표(頭民) 2명이 간도파출소에 보호를 요청하여 간도파출소가 촉탁사무관 및 헌병 일행을 파견하여 조사를 하고 이 사실을 길림변무독판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에 길림변무독판이 “조선인이 임의로 ‘변발역복’하여 청국의 신민으로 되려고 하여, 파관처에 출원한 것을 허가한 것이 강박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 지방은 돈화

47) 간도파출소는 처음에는 백두산에서 노야령에 연한 남북의 산맥 이동을 동간도, 이서를 서간도로 지칭하였다가, 1908년 7월 조선인이 일반적으로 압록강 대안을 서간도로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종래의 동간도를 동간도동부, 서간도를 동간도서부로 정정하였다.

현 관할에 속하여 변경에 있는 연길청 관내의 조선인과 같이 볼 수 없으며, 1890년에 제정한 <귀화입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르면, 만약 조선인으로 귀화하려는 자는 귀국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경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청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라고 했다.⁴⁸⁾ 조선인들은 조선인이 기껏 수백명에 지나지 않는 이곳에도 헌병분견소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⁹⁾

1909년 5월 이후 간도파출소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인 중에서 지금도 ‘변발청장’한 자가 있지만 간도파출소 개설 당시에 비하면 현저히 그 소가 감소하여, 동간도동부에서 변발청장한 조선인은 112호, 남 150명, 여 37명으로 모두 187명에 불과하였다.⁵⁰⁾ 조선인이 치발역복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토지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이었다. 치발역복 시기는 40년 전(1869년-필자)부터였으며, 치발역복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12년 내지 4년 전(1897-1905년-필자)이었다.⁵¹⁾ 청 정부는 간도의 영토 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1860년의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하고,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대만, 평호열도,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고, 1897년에 광주만을 프랑스에, 구룡반도, 위해위를 영국에, 교주만을 독일에, 대련을 러시아에 각각 조차해 준 것과는 달랐다. 청과 일본의 간도영유권 협상은 만주에서의 다른 이권에 관한 협상과 같이 다루어졌다(‘간도 6안’).

1909년 9월에 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다른 ‘간도 5안’과 교환하는 조건으로(길림-회령 철도부설권 등) <두만강중간 界務條款(통칭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4개의 영사관 설치권, 잡거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민사

48) 『간도안(2)』, 194~195쪽

49) 『간도안(2)』, 179~180쪽.

50) 이들은 초중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종성간도에 소재하는 양정학당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치발역복을 한 사례도 있었다. 1909년 1월에서 5월까지 실시한 호구조사에 의하면 동간도동부의 조선인은 16,101호, 남 47,171명, 여 35,828명으로 모두 82,999명에 달하였다. 청인은 3,900호, 남 17,198명, 여 10,173명으로 모두 27,371명이었다. 전체 인구는 20,001호, 남 64,369명, 여 46,001명으로 모두 110,370명이었다.

51) 『간도안(2)』, 242~243쪽.

상의 권리, 재판입회권과 복심청구권(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지는 대신에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해 주었다. 청 정부는 종래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거류지(商埠地) 외에서의 가옥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잡거지(간도협약에서 조선인의 거주를 인정해 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제 간도의 조선인 대부분은 치발역복을 하지 않고서도, 곧 청에 귀화하지 않고서도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1909년에 청 정부가 <국적조례>를 제정하여 이제 더 이상 치발역복이 국적 취득과 동일시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치발역복을 국적 취득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1909년 청 정부는 훈춘부도통이문을 철폐하고 훈춘청을 신설하였으며, 화룡현과 왕청현을 설치하였다. 간도협약에서 말하는 ‘두만강이북 잡거지’는 화룡현과 연결현이어서 훈춘청과 왕청현, 곧 접거지 외 지역은 간도협약에서 규정한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⁵²⁾ 따라서 청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치발역복을 강요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서는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된 후에는 간도의 조선인이 법적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일본 침략의 침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청 정부는 간도의 조선인을 귀화시키려고 했으며, 그것은 곧 치발역복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1912년 중화민국 정부가 단발령을 반포하여 이제 더 이상 ‘치발’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지만, 간도의 조선인은 중국과 일본의 이중적인 관할을 받아야 했으며, 그것은 여전히 중국 정부와의 복식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뜻하였다.

52) 小林玲子, 2012, 「간도조선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중일의 대립」, 『중국사연구』 79, 208-211쪽.

V.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분리 시기(1910-1945)

치발이 사라지고 조선인의 경우에도 단발이 증가하게 되어, 치발, 상투(蓄髮), 단발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복식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미 치발역복을 한 사람들은 단발 역복을 하여 귀화자임을 나타냈다. 만주의 조선인은 단발 청장을 하거나, 단발 양장을 하거나, 또는 원래의 ‘白衣黑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두발과 복식은 국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였다. 일본은 조선인이 비록 중국에 귀화를 하였다고 해도 조선의 법을 적용하여 국적 이탈을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 귀화를 한 조선인은 ‘이중국적자’로 되어 중국 정부와 일본 영사관의 이중적인 관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서간도(중국 측 명칭은 東邊道)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일본영사관이 없었으므로 조선인으로 남는다고 해도 일본영사관의 관할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간도에 온 독립지사들은 서간도를 기지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귀화하는 것, 곧 중국인 복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변장(變裝)운동’이라고 했다.

이상룡이 “머리를 자르고 복식을 바꾸어 모두 중국식으로 따랐다(剃頭改服一遵華制)”고 표현한 그대로 의복, 모자, 신발 등을 그들과 똑같이 변장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 파견원의 기록에서 나오듯이, 압록강 대안 부근의 조선인들은 조선의 복장 그대로였지만 배일 조선인들은 중국의복을 입고 단발을 하였다는 일견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1913년 이상룡이 유하현의 조선인을 대신하여 중화민국 국회에 보낸 제의서에서는 조선인을 중국땅에서 생활하게 하고 동화시킬 수 있는 8가지 방침 가운데 첫 번째로 “의관을 금해서 형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를 들었다. 그러나 1932년 이상룡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에게 “내가 항상 중국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중국에 동정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 좋아서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⁵³⁾

53) 서중석, 2001,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74쪽, 77쪽, 418쪽.

이상룡이 서간도에서 실시한 변장운동은 간도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간도에서는 같은 기간에 신교육과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간민회(간민교육회의 후신) 세력과 서당과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유림은 사유계, 농민은 농무계) 세력이 충돌하였다. 간민회는 친중 세력으로 청 말에 치발입적을 주장하였던 반면에 공교회 세력은 치발역복에 저항하였다. 1910년 3월에 반일적 애국지사들이 청국의 보호 하에서의 교육을 표방하고 간도 한인 사회를 결집하기 위해서 한민교육회를 설립하였다. 회원들은 교육과 기독교를 전파하고 청국의 의복과 머리모양을 한 때문에 ‘유신파’ 또는 ‘신학파’라고 불렸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1912년 9월에 24명의 전통적인 유학자들이 사숙개광회의 창립을 시도하였으나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실패하였다. 이들은 비밀리에 사유계를 설립하고 중국 국적 취득, 중국식 의복과 두발 채용과 같은 간민회의 동화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⁵⁴⁾

중국 복식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 정부가 조선인을 다시 강제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1920년대 후반에 다시 등장하였다. 간도 지역과 남만주철도부속지의 일본영사관 세력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친일파인 ‘민회’ 세력이 강하였던 반면에 그 외 지역에서는 일본영사관 세력보다는 중국 지방 당국이 더 강력하였기 때문에, 중국 지방 당국의 추방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국적취득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만주의 반일 세력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양분되어 있었고, 다시 민족유일당 건설 방도를 둘러싸고 민족주의자들이 단체가입과 개인가입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1927년 11월 28일에 길림에서 길림재류동포임시대회를 개최하여 손정도, 최동오 등 정의부 지도층이 주도하여 ‘한교문제대책강구회’를 결성하였다. 1928년 2월 초에 길림성에서는 약 50개소의 강구회 지회가 건립되었다.⁵⁵⁾

54) 반병률, 2001, 『해외민족운동-만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182쪽, 184~185쪽 ; 김보희, 2008,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 『한국음악연구』 41, 18쪽.

55) 『동아일보』, 1928년 2월 3일.

중국 지방 당국은 조선인의 귀화의 조건으로 중국 복식 착용을 강요하였다. 하나의 예를 보면 이동현 지사는 1926년 2월에 현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누구나 중국의복을 입어야 되며, 20세 이상의 한인은 중국의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현에 제출하여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같은 사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를 명령한다는 훈령을 발표하였다.⁵⁶⁾ 입적 한교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까지 중복의 착용과 중국어 사용을 강요하였다.⁵⁷⁾ 이에 교섭위원(최동호, 김강기, 오인화, 최천택 등)들이 중국 측에 1928년 음력 1월 말일 이전까지, 재만한인 모두가 중국복장 착용토록하며, 남자들은 상투를 짧게 하고 여자들의 경우는 한인부녀들의 상징인 비녀를 사용 금지시키겠다고 보증하여야 했다.⁵⁸⁾

1928년 1월 9일에 봉천조선인회, 상부회, 신민현선인주민회, 무순조선인청년회, 철령조선인회, 해룡민회, 영구고려청년회 등 23개 단체, 40여 명 대표가 봉천의 서탑교회(조선인기독교교회당)에서 만주조선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재만조선인 투쟁방향과 귀화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안동, 봉성, 여순·대련 등지 대표들은 무조건 귀화를 주장한 반면에, 봉천, 장춘 등지 대표들은 귀화는 타당하지 못하며 민족동화와 추방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 끝에 재만조선인의 귀화를 지원하되 무조건의 귀화운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⁵⁹⁾

1928년 4월 18일에 강구회가 동성한족문제연합강구회를 발기단체로 해서 한족동향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1928년 5월에 반석현과 화전현에서 전민족유일당조직축성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단체 가입을 주장하는 축성회파와 개인 가입을 주장하는 협의회파로 분열하였다. 1928년 12월에 사회주의자들이 재중국한인청년총동맹과 재만농민동맹을 통해 한족동향회 지지를

56) 『동아일보』, 1926년 2월 19일.

57) 『동아일보』, 1927년 12월 6일, 18일 ; 황민호, 2010, 「일제하 간도봉기의 전개와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236쪽.

58) 『동아일보』, 1928년 1월 20일, 5월 19일.

59) 오세창, 1970, 「재만한인의 사회실태」 『백산학보』 9, 155~156쪽 ; 孫春日, 2009, 『中國朝鮮族移民史』, 中華書局, 339쪽.

표명했다. 12월 하순에 길림에서 김동삼, 김상덕 등 협의회파가 혁신의회와 동삼성구화한족동향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집행위원인 전성호가 주도하여 합법적 자치기관인 동향회를 지지하였다. 1928년 2월 길림에서 발표된 재만농민동맹의 선언서에서는 중국 주권하의 자치운동을 지지하였다.

1929년 4월에 축성회파는 제2차 3부통일회의를 개최하고 합동기관으로 국민부를 창립하하고, 9월에 개최된 제1회 중앙의회에서는 방침을 개정하여 공산주의자를 배제하고 한족동향회를 주구배라고 비난하였다. 7월에 발생한 중동로사건 이후에는 반제, 반러, 반공투쟁을 표방하였다. 1929년 11월 2일에 개최된 국민부 주도의 남만한인청년총동맹 수습대회에서는 한족동향회의 1년간 활동을 부정하고 민족 독자의 자치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1930년 5월에 30여개의 지회를 갖고 있던 한족동향회의 해산을 선언하였다.

1930년 4월 1일에 발행된 서울상해파 기관지 『노력자신문』 제2호에 게재된 「만주한인자치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동성한족동향회, 반석동향회, 국민부 등 민족 진영의 자치운동기관에 대해서 이중적 통치기관을 타도하고 민족자결권 획득을 목표로 투쟁단체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5월 30일에 간도봉기가 발생하였다. 중국 지방 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를 구실로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1930년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연길진수사가 국자가 중국극장에서 향·잡장 50여명을 소집하여 훈령을 내리기를 무지한 하급 군인의 폭행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했다.⁶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연길진수사가 “만일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면 이 방면의 치안상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떠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암암리에 일본 측이 개입하게 되면 양편(조선인과 중국 당국)이 모두 손해라는 뜻을 던지시 알렸으며,⁶¹⁾ 연길시 공안국이 60여명의 외사경찰을 신규 채용하였다.⁶²⁾

60) 『조선일보』, 1930년 6월 25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35쪽.

61) 황민호, 2010, 앞의 글, 235쪽.

62) 『조선일보』, 1930년 7월 17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30쪽.

1930년 9월 26일에 전연변민중대회소집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9일 12시에 용정시 공회당에서 중일 경찰의 감시 하에서 4,000명 군중이 참가하여 이인구의 사회로 전연변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15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구출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9월 30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길림성정부, 연길진수사처, 연길시정주비처에 항의하기로 하고, 사무실은 동아일보지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10월 10일에는 동북변방부사령관 장작상이 길림성 귀화한교 대표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잘못(과도한 진압)을 인정하고 언론기관에서는 양 민족의 감정이 선화하도록 노력하고 구금중인 조선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석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길림에서 3명, 교하에서 6명, 반석에서 3명을 공안국 관리로 채용하기로 했다.⁶³⁾ 10월에 중국 지방당국은 민족주의자 및 종교단체 유력자로 조직된 연변4현자치촉진회 설립을 인가해 주었다. 동 분회는 당분간 공산당 타도에 전력을 다하며 점차 자치 촉진을 계획하기로 하고, 유세대를 편성하여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의 선전문을 배포하였다.⁶⁴⁾ 11월 4일에 연길현 농회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장빈, 부회장에 전성호가 취임하였다.⁶⁵⁾ 이들은 공산주의의 타도를 위해 예수교 장로교파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회의를 갖고, 공산주의운동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8월 1일(국제반전기념일)에 발생한 길(림)둔(화)봉기에서는 봉기자들은 중국 경찰까지 공격하였으며 또한 기독교회를 공격하였다.⁶⁶⁾ 용정촌의 선교사 김모는 『민성보』에 공산주의에 대해 폄하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해서 협박장을 받았으며 간도공산당이 교회당을 습격하여 폭행과 협박을 자행하였다.⁶⁷⁾ 물론 주요한 공격 목표는 민회 세력이었다. 민회 주사 외 2명이 봉기자들에게 총살을 당하자, 민회간부와 민회장들이 총사직을 단행하였다.⁶⁸⁾

63) 『동아일보』, 1930년 10월 13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36~237쪽.

64) 『동아일보』, 1930년 10월, 11일.

65) 『동아일보』, 1930년 11월 12일.

66) 8월 29일은 한일병합기념일, 11월 7일은 러시아혁명기념일, 12월 11일은 광주폭동3주년 기념일이었다.

67) 『매일신보』, 1930년 8월 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24쪽.

천보산 구역 차조구 토문자 방면에서 480명에게 사형집행장이 발송되어 참의원이 속속 사표를 제출했고 용정 등 10명의 민회장이 10월 20일에 사직을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⁶⁹⁾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이 1930년 10월 17일에 간도로 출발하여 25일게 귀경하였는데, 그는 기자회견에서 총독부 보조를 받는 학교와 교원은 이집 저집으로 피신을 다니는 상태이며 보조서당으로 소실된 곳이 3곳이며, 그 가운데 두도구에 있는 학동서당은 5월 사건에 소실된 것을 복구하였는데 이번에 또 소각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18개 민회 임원의 사직은 지난 21일부터 복직하기로 했다고 했다.⁷⁰⁾ 남양평, 천보산, 대랍자, 용정촌, 국자가의 민회장들이 1월 16일에 서울에 와서 외사과장을 방문하였다.⁷¹⁾

남양평에서는 현립제7학교가 방화되었다.⁷²⁾ 중국학교까지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길림성교육청은 교육권 회수 운동의 일환으로 <간민사립학교취체판법>을 공포하여 조선어, 조선사, 조선지리를 교육하는 외에 기타 과목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표준에 의하여 공립으로 개편하거나 혹은 해산한다고 했다.⁷³⁾ 1931년에 동북성위원회가 조선인 교육을 엄중히 감독할 것을 훈령하면서 한인들의 조선복 착용도 금지시켰다.⁷⁴⁾ 이러한 중국 지방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1931년 1-4월에 중성을 건너온 한인 수만 3,005명에 달하였고, 204월에 상삼봉의 국제철교의 통과자만 1,733명에 달하였다.⁷⁵⁾ 이와 같은 조선과 중국과의 충돌이 ‘만보산사건’의 배경을 이루었다. 조선인 민회 세력은 일찍이 1923년 2월에 발생한 조선인 청년 최창호가 중국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간도자치를 결의하고 자치운동을 전개한

68) 『조선일보』, 1930년 10월 9일 : 『동아일보』, 1930년 10월 24일, 30일, 11월 1일, 12일.

69) 『동아일보』, 1930년 10월 30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28쪽.

70) 『동아일보』, 1930년 11월 28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26쪽.

71) 『동아일보』, 1931년 1월 29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28~229쪽.

72) 『조선일보』, 1930년 10월 19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31쪽.

73) 『동아일보』, 1930년 11월 21일 : 황민호, 2010, 앞의 글, 229~230쪽.

74) 『신민』 1-3, 1931년 3월 : 황민호, 2010, 앞의 글, 235쪽.

75) 『동아일보』, 1931년 5월 11일 : 조춘호, 2010, 『'9·18 사변'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자치 운동과 중국공산당 대응』 『한중인문학연구』 30, 394~395쪽.

적이 있었다. 1928년에는 간도의 조선인 중 약 78.3퍼센트가 민회에 가입하였다.⁷⁶⁾

외교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이 쉽게 일본영사관에 굴복하였다.⁷⁷⁾ 만주사변이 발발한 후인 1932년 2월 15일에 민생단이 결성되어 한인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생단은 7월 14일에 정지되어 5개월 남짓 활동하였을 뿐이었지만 나중에 중국공산당 내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민생단 혐의로 살해되는 소위 ‘민생단사건’의 발단을 제공해 주었다.⁷⁸⁾ 민회 세력은 1932년 2월 26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신경에 가서 공민권 획득과 특별자치구 건립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40만 연변조선인대표대회를 개최했다.⁷⁹⁾ 민회에는 조선인 80퍼센트 이상이 가입했다. 1933년에는 간도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강원도지사 이범익이 성장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1933년 4월에 길림성공서가 종래의 주비처를 폐지하고 특과주연변판사처를 설립하였다. 처장에는 만주국인이, 행정과장에는 조선인, 경무과장에는 일본인이 부임하였으며, 조선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과 조선인 7-8명이 만주국 관리로 임명되었다. 21일에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이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 본위의 간도 행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⁰⁾

간도에서 민회 세력과 맞서 싸웠던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1927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총국이 하얼빈에서 성립하였다. 1928년 만주성위가 <만주의 조선농민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농민은 중국혁명의 중요한 요소이며 조선인은 민족자결의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인은 산

76) 조춘호, 2010, 앞의 글, 402쪽.

77) 1920년대 말 북간도에서 한인들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배척하고는 하루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여추, 1930, 『연변조사실록』, 연변대학교출판사, 1987(복각본), 77쪽 ; 김태국, 2000, 『북간도지역 조선인거류민회(1917-1929)의 설립과 조직』 『역사문제연구』 4, 259쪽.

78) 민생단 사건으로 조선인이 최소 500명, 일부 자료에서는 2,000여 명이 희생당하였다고 한다. 유격근거지 전체연구가 2만여 명이었다. 김성호, 2008,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79) 『간도신보』, 1932년 2월 28일 ; 조춘호, 2010, 앞의 글, 404쪽.

80) 『동아일보』, 1933년 4월 23일 ; 조춘호, 2010, 앞의 글, 406~407쪽.

동, 하북, 하남에서 이주한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인정하였다.⁸¹⁾ 1930년 4월 만주성위 소속의 소수민족운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한 <재만한국노동군중운동결의초안>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인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동만과 유하구에서는 즉시 노농소비에트 정권을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⁸²⁾

1931년 11월 강서성 서금에서 개최된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제1차 회의에서는 중국경내에 사는 동북지역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완전히 승인하였다.⁸³⁾ 다만 이 원칙은 반드시 중국에서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중국의 완전해방을 이룬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그러나 만주사변 후에는 王明의 좌경적 노선의 영향으로 중국공산당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조선 소비에트 창설을 한인자치와 간도지역 독립이라는 친일적인 것, 곧 중국혁명에 집중되어야 할 역량을 분산시키고 중국혁명을 반대하는 민생단의 주장으로 해석하였다.⁸⁴⁾ 조아범, 종자운 등 중국인 간부는 유격근거지 내에서 한인들의 70-80퍼센트가 ‘民生團’이라고 주장하였고, 동만특위 서기인 동장영은 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소비에트를 건립한 것은 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구 건립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치문제를 슬로건에서 삭제하였다. 그는 ‘의복이나, 언어, 생활관습의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강조-필자)’을 갖고서 중국공산당의 민족 정책의 차별성을 내세웠다.⁸⁵⁾ 간도 현지 중국공산당 중국인 간부는 자신들의 활동 범위가 주민의 거의 전부가 한인인 유격근거지에 국한되는 상황에서 당원의 인적 구성을 중국인 위주

81) 이진영, 2000,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의 기원에 대하여(1927-1949)』, 『재외한인연구』 9 : 조춘호, 2010, 앞의 글, 414쪽.

82) 조춘호, 2010, 앞의 글, 414~415쪽.

83) 『중국현대사자료 권3』, 217~220쪽 : 조춘호, 2010, 앞의 글, 415쪽.

84) 한인소비에트, 한인자치, 간도혁명특수론 등 구호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한홍구, 2000, 『민생단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25, 198쪽 : 조춘호, 2010, 앞의 글, 416쪽.

85) 『한국민족주의과생주의자, 마건』, 대소왕청군중회, 1933년 8월 14일 : 정협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편, 『연변문사자료회집』 35, 378~380쪽 : 조춘호, 2010, 앞의 글, 417쪽.

로 바꾸는 대신에 조선인의 복식 등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 주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분리시키는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간도 조선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정책은 나중에 반우파투쟁이나 문화대혁명에서도 재연되었다.⁸⁶⁾

1900년 직후의 간도 조선인 중에서 치발역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간도 조선인 중에서는 일본 복식을 한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던 시절(1938년에서 1941년까지)에 방학 때 귀향하였을 때의 모습에 대한 동생 윤일주의 회고를 보면, 적어도 간도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회지 용정에서는 일본 옷을 입는 조선인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윤동주-필자)의 산책길의 옷차림은 삼베나 옥양목의 한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책이 쥐어 있지 않은 때가 없었다. 방학 때는 거의 한복 차림이었고, 그 모습도 맵시 있었지만, 사자모나 연희전문 학생들이 잘 쓰던 미국식 남자 맥고모에 곤색 학생복 차림도 잘 어울리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여 ‘하오리’나 ‘유까다’를 입은 조선 사람을 보면 매스껍다고 외면하였고, 친구들이 일본말로 이야기하여도 애써 우리말로 대화곤 하였다.”⁸⁷⁾

그러나 간도의 조선인은 그나마 조선옷을 많이 입는 축이었다. 만주의 다른 지역의 조선인은 조선옷을 입는 것을 수치로 생각할 정도로 조선옷 입는 것을 꺼려하였다. 다음이 진술이 이를 나타낸다. “만주국에 있어서 생활사

86) 한홍구, 앞의 글, 193쪽 ; 조춘호, 2010, 앞의 글, 419쪽. 중국공산당에 입당해서 중국 혁명을 위해서 1928년 12월에 광둥봉기에 참가했던 조선인들도 중국 복식이 아니라 ‘양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들이 비록 조선 복식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중국인과는 구별되는 복식을 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적들은 단발머리를 한 여인,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양복을 입은 조선인을 보기만 하면 살해하였다 한다. 단발머리를 한 여인과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면 대부분 혁명가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둥봉기에 많은 조선인이 참가했다는 것을 간파한 적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마구 살해하였다. 양복차림을 하고 중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조선인으로 판단하고 죽였다.” 김성룡 저, 최룡수 감수, 2005, 『불멸의 발자취 : 중국 관내지역 조선민족반일투쟁유적지 답사』, 북경 : 민족출판사, 214쪽.

87) 윤일주, 1976, 『윤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6, 156~157쪽 ; 송우혜, 2004, 『윤동주 평전 (재개정판)』, 푸른역사, 250~251쪽.

정이 비교적 조선과 다름이 없이 조선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간도를 제하고는 어느 곳의 다두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합소이나 조선옷을 입고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격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이나 양장을 하고 다녀야 행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곳거리울 수 없는 비겁한 자멸적 태도의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타인에게 선계라고 지탄을 받고 차별을 받게 된다든지 마차를 탈 수 없다든지 하는 이외에 여러 가지 비자주적인 기우로 드디어는 가면을 쓰는 것으로 천박한 목전생활의 공리를 획득하여 보는 소아적인 비굴한 행위라 할 것이다.”⁸⁸⁾ 이상룡의 예에서 두발과 복식이 나타내는 것은 표면(국적)과 이면(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변장’이라고 했다. 변장은 조선인의 이중국적 상황(조선인으로 남는 것은 곧 법률적으로 일본인임을 인정하는 것), 식민지인인 동시에 이민자라는 이중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위 증언에서는 ‘변장’이 ‘가면’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그것은 ‘변장’과 같은 운동이 될 수는 없었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재만조선인의 복식 투쟁이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인에게 청인은 ‘胡人’이었고 그들이 호인인 표지는 그들의 두발인 ‘치발’과 그들의 복식인 ‘호복’이었다. 만주족은 한족의 두발과 복식을 따르지 않고, 고유의 두발과 복식을 따랐을 뿐 아니라 이를 한족에게도 강요하였다. 따라서 치발역복은 한족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中華(明)의 문명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조선인에게도 치발역복은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족이 치발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듯이, 1872년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도 치발역복을 받아들였다(假胡). 그러나 이 경우는 국가가 치발역복, 곧 ‘귀화’를 강요한 것이

88) 『滿鮮日報』 1940년 5월 16일자(조간), 1면.

아니라, 국가 바깥에 있는 중국인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조선인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이 경우도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는 강요된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연해주로 이민을 간 조선인도 러시아의 두발과 복식, 곧 ‘단 발양장’을 따랐다. 러시아도 문화적 동화—러시아의 국적 표시는 복식이 아니라 종교, 곧 정교였다—를 가시적인 귀화로 본 것은 청과 같았다. 두 만강 대안의 조선인이 연해주의 조선인과는 달리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두만강 대안의 조선인은 그 지역에 ‘간도’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을 ‘분계강’으로 해석함으로써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관념을 가졌다. 이것은 간도를 조선인이 개척하였고 간도에서 조선인이 줄곧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치발역복’이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청이 ‘귀화’를 강요한 것은 전통시대에는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살러 온 것은 곧 ‘귀화’를 의미하였으며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근대법으로서의 ‘국적법’이 없는 상황에서 귀화의 방법으로 문화적 동화(그것이 ‘귀화’라는 의미, 곧 ‘王化’였다)를 강요한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치발역복은 조선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치발역복은 만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었지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아니었다. 곧 한족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간도의 조선인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두발과 복식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조선 내지의 조선인과 공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조선인은 치발역복을 오랑캐의 문화라고 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민족주의)의 한 토양을 이루었을 것이다. 간도의 조선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이 중국 정부인가 조선 정부인가 하는 차이보다는, 다시 말하면 국적보다는 국적이 수반하는 권리—거주권과 토지

소유권, 나아가 참정권 등과 같은 — 가 더 중요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인이 유독 치발역복에 저항하였는가 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치발역복에 관한 관념은 또한 당시 청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중첩되어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10년 이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된 후에는 조선이라는 국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치발’ 관행도 중국인이 되는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조선인에게 복식(역복)은 두발(치발)과 같은 정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식의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상징성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었다. 1920년대 후반 간도의 조선인의 국적이 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다시 ‘역복’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인에게 치발역복과 같은 정도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에게 민족 복식을 고수하려는 관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복식은 중국인에게도 조선인에게도 여전히 문화적 동화의 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중국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게 비록 ‘창씨개명’을 강요하기는 했지만 ‘역복’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게 ‘색복’ 착용과 ‘국민복’ 착용 등을 장려하였지만, 일본의 전통 복장 착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⁸⁹⁾ 이것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한편으로는 동화시키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하고 차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자체가 이미 양복 복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민족 복식을 강요할 동기가 약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내선일체’가 선전되는 시기에는 조선인 가운데서도 일본 복식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쟁’ 시기였으므로 일본 복식이 아니라 국방복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본 복식도 조선 복식도 없었다.

89) 공제욱, 2006, 「의복 통제와 ‘국민’ 만들기」,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안태윤, 2007, 「일제말 전시체제기 여성에 대한 복장 통제—몸빼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 『사회와 역사』 74 등을 참조하라.

현지 중국공산당은 간도의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을 부여하면서도 문화적 동화를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전의 현지 중국 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복식 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이것은 비록 ‘귀화’가 아니라 ‘항일’이 공통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간도의 조선인은 문화(민족) 정체성과 정치(국가) 정체성을 다르게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복식 투쟁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분리와 통합으로 인해서 ‘간도의 조선인 문제’가 해결 — 중국 조선족의 탄생 — 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F.A. 매켄지(McKenzie, Fred Arthur), 신복룡 역주, 1999, 『대한제국의 비극』, 집문당
- 강상규, 2010, 「1884년 “의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 『세계정치』 12
- 고바야시 레이코(小林玲子), 2012, 「간도조선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중일의 대립 - 1909년-1915년」 『중국사연구』 79
- 공제욱, 2006, 「의복 통제와 ‘국민’ 만들기」,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 구완희, 2013, 「한말의 의병장 경암(敬庵) 서상렬(徐相烈)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 국사편찬위원회, 1972, 『고종시대사』 6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두산동아
- 국회도서관, 1975, <간도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의 참고자료 1>, 간도영유권관계발
췌문서
- 권오창, 2004,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 김기수, 1962, 『일동기유』,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 김보희, 2008,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 『한국음악연구』 41
- 김선민, 2013,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 19세기말 청과 조선의 관계」 『중국사연구』 82
- 김성남, 2006, 「신보를 통해 본 1880년대의 조선사회」 임경석 외, 『근대전환기 동아
시아 삼국과 한국 : 근대인식과 정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3~80쪽
- 김성룡 저, 최룡수 감수, 2005, 『불멸의 발자취 : 중국 관내지역 조선민족반일투쟁유
적지 답사』, 北京 : 民族出版社
- 김성호, 2008, 『동만항일혁명투쟁특수성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김소현, 2005, 「19세기 조선의 의생활 풍속」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공저, 『19
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 김정규·요세창 편, 1968, 『일제비록(1) 간도문제 : 통감부간도파출소기요』, 한국사
료연구소
- 김주리, 2014, 「일제강점기 양복 담론에 나타난 근대인의 외양과 근대소설」 『인문연
구』 72
- 김춘선, 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移民實邊’ 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연구 : 북간
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
- 김태국, 2000, 「북간도지역 조선인거류민회(1917-1929)의 설립과 조직」 『역사문제연
구』 4
- 김태국·김춘선, 2002, 「조선후기 한인의 북방이주와 만주개척」 『한국사론』 34

- 金弘集, 1971, 『修信使日記』 권2, 국사편찬위원회, 『修信使記錄』
- 다키 고지(多木造二), 박삼헌 역, 2007, 『천황의 초상』, 소명출판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譯註『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원저: 篠田治策 편저, 1910), 동북아역사재단
- 마릴린 혼·루이스 구렐(Horn, Marilyn J & Gurel, Lois M), 이화연·민동원·손미영 역, 1988,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 閔龍鎬, 1984, 『關東倡義錄』, 국사편찬위원회
- 박걸순, 2009, 「북간도 간민회 선행조직의 추이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51
- 朴堃, 1921, 「在間島 조선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開闢』 13
- 반병률, 2001, 『해외민족운동-만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 베아트리스 폰타넬(Fontanel, Béatrice), 김보현 역, 2004, 『치장의 역사 :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의 욕망, 그 매혹의 세계』, 김영사.
- 서굉일·김재홍, 1997, 『북간도민족운동의 선구자 규암 김약연선생』, 고려글방
- 徐紘一·東巖 편저, 1993, 『간도사신론-선구자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9)』, 우리들의편지사
- 서중석, 2001,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구양근 역,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 연구』 9
- 小林玲子, 2012, 「간도조선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중일의 대립」, 『중국사연구』 79
- 송기섭, 2015, 「한시를 통해본 의암 유인석의 反開化 논리와 華夷의 서양인식 연구」 『한문고전연구』 30
- 송우혜, 2004, 『운동주 평전(재개정판)』, 푸른역사
- 안태운, 2007, 「일제말 전시체제기 여성에 대한 복장 통제-몸빼 강제와 여성성 유지의 전략」 『사회와 역사』 74
- 양태진, 1999, 『근세한국지역논고』, 경인문화사
- 오세창, 1970, 「재만한인의 사회실태」 『백산학보』 9
- 오은경, 2006, 『베일 속의 이슬람과 여성』, 프로네시스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 윤병석, 2007, 「조선인(한인)의 간도 이주 개척과 ‘간도개척사」 『백산학보』 79
- 윤일주, 1976, 「운동주의 생애」 『나라사랑』 6
- 윤정희, 1991, 「간도개척사」 『한국학연구』 제3집(별집)
- 윤치호, 2001, 『국역 윤치호 일기 1권』,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경미, 1977,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33(1)
- 이경미, 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페리다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학

위논문

- 이동진, 2005, 「‘강북’의 조선인 사회 :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논총』 9
- 이동진, 2012, 「만주국의 조선인 :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 『만주연구』 13
- 이소희, 2015, 「‘나’에서 ‘우리’로 :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 『여성문화연구』 34
- 이진영, 2000, 「중국공산당의 조선족정책의 기원에 대하여(1927-1949)」 『재외한인연구』 9
- 이행화·이경규, 2012, 「1920년대 일본 신여성의 서양복 수용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5
- 이화자, 2011, 『한중국경의 연구』, 해안
- 일본외무성·육해군성 편, 1989, 『일본의 조선침략사료총서』 20, 한국출판문화원
- 임영서, 1993, 「1910-1920년대 간도한인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민회」 『한국학보』 73
- 임윤정·전혜숙, 2011, 「19세기말 단발령과 상투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4(2)
- 임윤정·전혜숙, 2012, 「내한 서양인 저서에 나타난 19세기말 조선남자의 상투와 단발령에 관한 시각」 『한복문화』 15(2)
- 전광하·박용일 편저, 2000, 『세월속의 龍井』, 연변인민출판사
- 전혜숙·임윤정, 2004, 「근대 여성사적 측면에서 본 단발의 사회적 인식 변화 : 개화기에서 1930년대까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2)
- 정교 변주승 역, 2004, 『대한계년사』 권1, 소명출판
- 정협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문사자료위원회 편, 『연변문사자료회집』 35
- 조선족략사편찬조, 1989, 『조선족략사』, 백산서당
- 조춘호, 2010, 「‘9·18 사변’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자치운동과 중국공산당 대응」 『한중인문학연구』 30
- 조춘호, 2010, 「1920년대 후반의 정치정세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자치운동」 『한국학논총』 33
-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회 편, 1972, 『청계중일한관계사료』 10
- 채영국, 1997, 「1920년대 중후기 중일합동의 재만한인 탄압과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 최봉룡, 2009, 「북간도 한인자치운동의 효시 : 간민회의의 시말과 그 성격」 『한민족연구』 7
- 최익현, 1977, 『국역 면암집』, 솔
- 한상권, 2007, 「1920년대 여성해방론 : 단발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7
- 한홍구, 2000, 「민생단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25
- 허동현, 1999,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 근대의 길목에 선 조선의 선택』, 당대
- 황민호, 1995,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사연구』 90

- 황민호, 1998,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공산주의자들의 노선전환과 간도봉기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79
- 황민호, 1998,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 황민호, 2003, 「1920년대 재만 한인문제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과 그 성격」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20
- 황민호, 2005, 『일제하 만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민족운동』, 신서원.
- 황민호, 2006, 「재만 한인의 합법적 자치운동의 전개와 ‘자치’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 황민호, 2010, 「일제하 간도봉기의 전개와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 『(1964) 清季外交史料』 第七卷, 宣統朝, 臺北: 文海出版社
- 高彥頤(Dorothy Go) 著, 苗延威 譯, 2007(2005), 『纏足: ‘金蓮崇拜’盛極而衰的演變』, 臺北: 遠足文化事業有限公司
- 孔定芳, 2013, 「清廷剃發易服與明遺民的抗爭」 『歷史學研究』 5
- 陸勇, 2010, 「清初漢人國家觀念的變遷—從“薙發令”下漢人身份的轉變來考察」 『西南科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 方毓宁, 2012, 「辛亥前後蘇滬剪辮風潮」 『檔案與建設』 9
- 樊學慶, 2014, 『辮服風雲: 剪髮易服與清季社會變革』, 三聯書店
- 樊學慶·清末粵, 2007, 「港地區革命黨人的剪發易服輿論」 『學術研究』 5
- 孫春日, 2009, 『中國朝鮮族移民史』, 中華書局
- 楊暉, 2008, 「試論清初漢族知識分子的精神處境—以“薙發令”爲中心」 『安徽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6
- 嚴昌洪, 1982, 「辛亥革命與移風易俗」 『華中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5
- 呂俊昌, 2015, 「一束裸露着的神經-16世紀以來海外華人的髮型問題探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
- 王冬芳, 1993, 「剃髮-清初民族政府定策失敗的實例」 『第二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天津人民出版社.
- 王志強, 2011, 「乾隆十三年剃發案的身體政治史探究」 『甘肅社會科學』 3
- 劉志琴, 1994, 「衣冠之治的解體和思想啓蒙」 劉青峰 編, 『民族主義與中國現代化』, 香港中文大學出版社.
- 劉志琴, 2005, 「服飾變遷—兼文化的社會思想史」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編, 『近代中國與世界(第三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陸勇, 2010, 「清初漢人國家觀念的變遷—從“薙發令”下漢人身份的轉變來考察」 『西南科技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7(1)
- 林士鈺, 2001,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臺北: 政治大學歷史系.

- 張德安, 2006, 「身體的爭奪與展示－近世中國髮式變遷中的權力鬭爭」, 『中國社會歷史評論』 7.
- 張世瑛, 2009, 「清末民初的剪辮風潮及其所反映的社會心態」, 『國史館館刊』 22
- 張育甄, 2007, 「女性身體的文化・政治與想像：評價 Cinderella's Sisters-A Revisionist History of Footbinding」, 『臺灣師大歷史學報』 37
- 張希, 2013, 「辛亥革命期間的新國民形象論述－以“剪辮”的社會輿論為中心」, 『南京政治學院學報』 3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資料』 4
- 陳宝良, 2013, 「清初士大夫遺民的頭發衣冠情結及其心理分析」, 『安徽史學』 4
- 陳生璽, 1999, 「剃發令對清初的政治影響」, 『南開學報』 4
- 陳蘊茜, 2007, 「身體政治：國家權力與民國中山裝的流行」, 『學術月刊』 9
- 馮爾康, 1985, 「清初的剃發与易衣冠－兼論民族關係史研究內容」, 『史學集刊』 2
- 何杰, 2011, 「試論辛亥革命后漢族傳統服飾未能復興的原因」, 『劍南文學』 8
- 韓冷, 2015, 『流行背後秘密：中國現代服裝的文化內涵』, 台北：新銳文創
- 侯杰・胡偉, 2005, 「剃發・蓄發・剪發－清代辮發的身體政治史研究」, 『學術月刊』 10
- 間島省公署 總務廳文書課, 1936, 『間島史(上) 古本』
-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
- 許春花, 1999, 「‘滿洲事變’以前の間島における朝鮮人の國籍問題の展開」, 一橋大學大學院社會學研究科・社會學部 博士學位論文
- Corrigan, Peter, 2008, *The Dressed Society : clothing, the Body and Some Meanings of the World*, London : SAGE Publications, 2008.
- Turner, T., 2012(1980), “The Social Skin”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2(2)(reprint)

투고일 : 201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22일

■ Abstract ■

Koreans in Kando and “Struggle for Clothing” –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Political Identity –

Lee, Dong J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ando is a region where Koreans settled earlier than the Chinese and formed a majority. The Chinese government intended to expel the Koreans from Kando or naturalize them. The symbol of naturalization was to wear the Chinese hairstyle and clothing, a clear form of cultural assimilation. The Joseon Koreans could easily embrace assimilation with the Chinese with their willing belief in sinocentrism. However, Joseon did not regard the Qing Dynasty as belonging to the sino-culture and rather had a belief in the so-called ‘petit sinocentrism’ that Joseon had inherited from the Ming Dynasty. Thus, Koreans in Kando resisted the order to wear the Qing hairstyle and clothing impos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mposed. Moreover, the idea of keeping their cultural identity—‘cultural (clothing) nationalism’—was sometimes shown in the form of ‘land nationalism’. However, with ‘the nation’ disappearing after Korea had been colonized, as such ‘land’ had lost its meaning. Instead, the Koreans in Kando sought after ‘autonomy’ between th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This autonomy could be granted by either of the two countries or should be obtained by Koreans themselves. In the late 1920s, the Kuomintang government forced the Chinese outfits on the Koreans as the condition of naturalization. But in the early 1930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ch ha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Manchu invasion, decided to grant nationality to Koreans in Kando. These Koreans were the main force of the communist movements in the area, and the Chinese attire was not imposed on them. This meant that the Koreans in the region were granted their separate cultural (ethnic) identity and political (national) identity.

Furthermore, this privilege provided the foundation on which the Koreans and the Chinese in the area could be united and help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s in the Kando.

Key words : Koreans in Kando, struggle for clothing, 'hair-cut and change of clothing', cultural identity, political identity